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단5112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8913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가단511214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이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영철

변론종결 2021. 8. 12.

판결선고 2021. 9. 9.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6. 7. 5.자 145,499,500원의 증여계약 및 2016. 7. 11.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5,49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2.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6억 4,800만 원, 보증기간 2015. 2. 11.부터 2016. 2. 1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8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6. 2.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액을 6억 3,200만 원으로, 보증기간을 2017. 2. 10.까지로 변경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6. 8. 5.경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D은행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2. 29. D은행에 대출원리금 508,397,8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등

1) B와 피고(B의 배우자이다)는 2010. 4. 12.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공유해 왔다.

2) 피고와 B는 2016. 6. 18. G 및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7. 11. G 및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G 및 H로부터 2016. 6. 18. 5,000만 원, 2016. 6. 26. 1억 원, 2016. 7. 1. 3억 원 등 합계 4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피고에게 그 직후인 2016. 7. 5. 2억 9,800만 원, 2016. 7. 11.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6. 7. 7. B에게 152,500,500원을 송금하였고, B는 같은 날 위 돈으로 D은행에 대한 대출금 전액 상환하였다.

5) 한편 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무렵 B에게는 위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이외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및 주식회사 I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B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직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아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유지분이 처분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는 당초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2021.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2016. 7. 5.자 145,499,500원의 증여계약 및 2016. 7. 11.자 4,000만 원의 증여계약으로 특정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B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직후 그러한 매매계약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증여계약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그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B가 2016. 6. 18.부터 2016. 7. 11. 사이에 2억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금융정보제공명령 결과를 토대로 증여계약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B가 2016. 7. 5. 145,499,500원, 2016. 7. 11. 4,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합계금 185,499,5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2021. 7.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 것으로 청구취지의 정정 또는 청구의 감축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초과 여부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접수일자가 아닌 이 사건 소장의 접수일자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4억 5,00만 원을 수령한 직후 피고에게 2016. 7. 5. 2억 9,800만 원, 2016. 7. 11.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2016. 7. 11. B에게 152,500,500원을 송금하여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는바, 이와 같은 금전거래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B가 2016. 7. 5. 145,499,500원(= 2억 9,800만 원 - 152,500,500원), 2016. 7. 11. 4,000만 원을 무상증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결국 위 2016. 7. 5.자 및 2016. 7. 11.자 증여계약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한달 남짓 만인 2016. 8. 5.에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 연체라는 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가 D은행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연대보증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508,397,833원109,536,5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B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무상증여한 행위는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에 이르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B의 사해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2016. 7. 5.자 및 2016. 7. 11.자 증여계약은 각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합계 185,499,500원(= 145,499,500원 +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윤희